

농 지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2021. 8.

농 립 축 산 식 품 부
(농지과)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농지 관련 정책 수립, 농지원부 작성·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개정('21.4.13)됨에 따라 모법 위임사항인 타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구체화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의 수수료 지급기준 개선하는 한편 농지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농지법 제54조의2제1항 위임에 따라 농지행정 활용 관련 타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구체화(안 시행령 제79조 신설)

농지정책 및 농지원부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해 타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등기부, 지적공부, 주민등록전산정보, 부동산거래자료, 가설 건축물·건축물 대장 등의 정보로 구체화함

나. 수수료 지급기준 상향(안 시행령 제55조제1항 개정)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수납 업무 관련 지자체가 받는 수수료의 지급 기준을 납입액의 100분의 8 이내로 하던 것을 100분의 12이내로 상향함
다. 수수료 사용범위 한정 등(안 시행령 제55조제5항 신설)

- 지자체가 받은 수수료를 농지보전·관리 업무비용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농지보전·관리 업무비용에 한정하여 사용토록 함
- 라. 지자체별 농지보전·관리특별회계 근거 마련(안 시행령 제55조제3항 신설)
- 지자체 조례로 수수료와 이행강제금을 재원으로 하여 농지보전·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마. 수수료 사용계획 및 실적 제출 의무화(안 시행령 제55조제4항 신설)
- 지자체장 및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이 농식품부장관에게 매년 수수료 사용계획 및 실적을 제출토록 의무화함
- 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규정 정비(시행령 별표 2)
- 타 법 개정 등에 따른 인용 조문 연계 정비함
- 사. 태양광 발전을 위한 염해간척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 연장(안 시행령 제38조제2항 개정)
- 염해간척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위한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최장 20년(최초 5년, 연장 15년)으로 하던 것을 태양광 장기공급 계약기간에 맞춰 23년(최초 5년, 연장 18년)으로 연장함
- 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한 정부관리양곡 가공·처리시설의 설치 면적 구체화(안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개정)
-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인 정부관리양곡 가공·처리시설의 부지면적을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구체화함
- 자. 포상금 지급기준 및 상한 조정(안 시행령 제72조제1항 개정)

1명당 연간 포상금 지급기준 상한 100만 원을 150만원으로 상향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다목1) 중 “계획홍수위선”을 “저수지 계획홍수위선”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시설”을 “시설로서 그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나목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전단 중 “15년”을 각각 “18년”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중 “납입액의 100분의 8”을 “수납액의 100분의 12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납입액의 100분의 2”를 “수납액의 100분의 2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을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및 한국농어촌공사사장”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등에 따른 현지확인을 위한 출장여비”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수납”으로, “업무비용으로 우선”을 “업무비용에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보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귀

속되는 수수료 및 법 제6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농지보전·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회계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한국농어촌공사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 할 수 있다.

⑤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및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은 매년 수수료 사용계획 및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 지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제72조제1항 후단 중 “100만원”을 “150만원”으로 한다.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자료의 제공 요청) 법 제54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등기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
3.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5.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자료
7.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에 관한 자료
8.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 자료
1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 내지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은행사업에 관한 자료
11. 그 밖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 보유한 자료로서 법 제54조의2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고의 기간의 연장) 제36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전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①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①-----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용도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3. ----- -----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진흥구역 안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 ----- ----- -----
1) <u>계획홍수위선</u> (計劃洪水位線)으로부터 상류 반경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역	1) <u>저수지 계획홍수위선</u> ----- ----- -----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생 략)

②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 시설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생 략)

2. 「양곡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양곡가공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해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3. (생 략)

③ ~ ⑦ (생 략)

제38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고의 기간 등) ① (생 략)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

-- 시설로서 그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8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고의 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장은 제1항(같은 항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

· 협의

가. (생략)

나. 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15년. 이 경우 1회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생략)

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협의

가. 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15년. 이 경우 1회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생략)

3. (생략)

③ (생략)

제55조(부과·수납업무수수료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 18년. -----

---.

다. (현행과 같음)

2. -----

가. -----

- 18년. -----

---.

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55조(부과·수납업무수수료 등)

①-----

38조제13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등에 관한 업무 :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액의 1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2.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 :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때에는 그 수수료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등에 따른 현지확인을 위한 출장여비 및 농지의 보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비용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

1. -----

----- 수납액의 100분의 12이내-----
2. -----

-- 수납액의 100분의 2이내--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및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수납 ----
----- 업무비용에 한정하여 -----.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보전·

	<u>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귀속되는 수수료 및 법 제6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농지보전·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회계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u><신 설></u>	<u>④한국농어촌공사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 할 수 있다.</u>
<u><신 설></u>	<u>⑤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및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은 매년 수수료 사용계획 및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 지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제72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4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제72조(포상금의 지급) ① ----- ----- -----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의 1명당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지급상한은 100만원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신설>

----. -----

----- 150만원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9조(자료의 제공 요청) 법 제54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등기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
3.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5.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공익직접

지불제도 관련 자료

7.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에 관한 자료
8.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
료
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
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
산 거래의 신고 자료
1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 제18조 내지 제2
4조의5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에 관한 자료
11. 그 밖에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 보유
한 자료로서 법 제54조의2제1
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
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연 락 처	(044) 201 - 1739